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성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94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3.

발 의 자 : 김성회 · 이수진 · 허성무
권향엽 · 장종태 · 서미화
양부남 · 박정현 · 김영환
안태준 · 윤건영 · 조승래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·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,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무인단속이 불가능하고, 현장 적발이 없는 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.

최근 불꽃축제 등 다중운집 행사 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관람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, 이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로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·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

(안 제160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62조 또는”을 “제62조, 제64조 또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제33조 또는 제34조”를 “제33조, 제34조 또는 제64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(제15조제3항, 제29조제4항·제5항, 제32조, <u>제33조</u> 또는 <u>제34조</u> 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)	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33조</u> , <u>제34조</u> 또는 <u>제64조</u> ----- -----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